(參 照)

'96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수립한 '96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 '96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 ㅇ 기금의 조성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1,000,000천원
- ㅇ 기금의 운용
  - －'96년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

4.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上水道事業本部所管)
(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5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李康玉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席에서 ○金芳任議員 왜 발언권 안 줘요?)

(「신상발언을 왜 안 주고 그래요. 議長, 발언권 줘요.」하는 議員 있음)

○李康玉議員 심사보고 끝나고 나서 발언권을 드리겠답니다.

(議席에서 ○金芳任議員 왜 발언권을 안 주느냐고요. 그것도 내가 한 시간 조금 지나서 와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발언권 달라고까지 신청해 놓았는데 이렇게 독주를 한다고, 이것은 권력남용이야.)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천백만 서울市民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西大門區 출신 水資源管理委員會 소속 李康玉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수도사업특별회계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은 96년 11월 12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國家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서울市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시유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재산가치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市 鷺梁津淨水事業所 內의 서울地方鐵道廳 소유인 철도용지 5필지 7,339m²의 토지를 淨水事業所에서 점유하여 사용중이고, 서울市 소유인 수도용지 1필지 5,454m²를 서울地方鐵道廳에서 점유하여 철도선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호교환하여 행정목적대로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공유재산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는 교환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재산교환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재석위원 14인의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97市有財産管理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수도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간의 재산을 교환(취득－시점유 국유재산 토지 5필지 7,339m², 처분－국가점유 시유재산 토지 1필지 5,454m²)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7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관리계획 계상재산
- ㅇ 취득 1건 토지 5필지 7,339m²(2,220평)
- ㅇ 처분 1건 토지 1필지 5,454m²(1,650평)